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 2024년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1. **일시** : 2024년 8월 16일 11:00~12:00

2. **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행정동 A806호 (8층 대회의실)
(주소: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3. 관련 근거
   - **협회 정관 제 21조(성원과 의결) 1항**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협회 정관 제 36조(정관변경) 3항**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참석자** : 재적회원 16명 중 11명 참석

직 책	성명	참석여부	직책	성명	참석여부
회 장	최문기(위원장)	○	이 사	송치은	×
부회장	김장성	○		민세홍	○
	김봉수	○		김대환	×
	허재관	○		권혁상	×
이 사	김정석(간사)	○		이광호	○
	김건회	○		우창우	○
	최동명	×		이길우	×
	남주곤	○	감 사	이정희	○

5. 회의안건
   가. 정관 개정(안)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정관개정 전문 붙임-2 첨부)
   나.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 제정(안) (붙임-3 첨부)
   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붙임-4 첨부)
   라. 등기이사 추가 선임
   마. 2024년 정기총회 일정 결정

6. 회의내용

□ 성원보고

○ 위원장 : 간사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간 사 : 재적위원 16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개회선언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한국연구행정협회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부의안 심의(의결안건 1호)

○ 위원장 : 의결안건 제1호 '정관변경(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간 사 : 정관변경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정관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1, 정관개정 전문 붙임-2 첨부)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결을 주문하다.

○ 김봉수 : 전반적으로 이사들의 수정의견이 잘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남주곤 :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와 이사회의 위계를 고려하여 구성과 의결사항이 잘 정리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민세홍 : 본회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광호 : 안건의 원안통과를 제안하다.

○ 송치은 : 제청하다.

○ 김건회 : 제청하다.

○ 위원장 : 동의와 제청을 확인하다. 의결안건 1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부의안 심의(의결안건 2호)

○ 위원장 : 의결안건 제2호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간 사 : 자료에 의거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 제정(안)'을 설명하다.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 붙임-3 첨부)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결을 주문하다.

○ 이정희 : 기관회원이 되면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은 연례 컨퍼런스 등록비 할인 등 혜택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다.

○ 이광호 : 초기에는 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연회비를 낮추고, 기관회원에게는 연례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는 티켓을 줄 것을 제안하다.

○ 허재관 : 대학, 출연연의 경우 구체적 회원등급 기준을 정하고, 기업이나 기타 법인은 개인회원만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다.

○ 김장성 : 구체적인 등급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Gold 등급 기관에게는 운영위원회 참여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김봉수 :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잘 정리되었으며, 국내 유사 협회의 회비징수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제시된 연회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최동명 : 김봉수, 김장성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남주곤 : 제청하다.

○ 민세홍 : 제청하다.

○ 위원장 : 동의와 제청을 확인하다. 의결안건 2호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부의안 심의(의결안건 3호)

○ 위원장 : 의결안건 제3호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간 사 :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범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설명하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전문 붙임-4 첨부)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결을 주문하다.

○ 우창우 : 원안에 동의하며, 협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건회 : 우창우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송치은 : 제청하다.

○ 위원장 : 동의와 제청을 확인하다. 의결안건 3호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부의안 심의(의결안건 4호)

○ 위원장 : 의결안건 제4호 '등기이사 추가 선임(안)'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간 사 : 등기이사 추가 선임 사유와 대상자를 설명하다.

- 성명 : 이정희(한국연구재단)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질문과 의결을 주문하다.

○ 김건회 : 원안에 동의하다.

○ 최동명 : 제청하다.

○ 위원장 : 동의와 제청을 확인하다. 의결안건 4호에 대해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부의안 심의(의결안건 5호)

○ 위원장 : 의결안건 제5호 '2024년 정기총회 일정 결정'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하도록 하다.

○ 간 사 : 안건을 설명하다.

○ 위원장 :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문하다.

○ 김봉수 : 12월 중 개최를 제안하다

○ 김장성 : 동의하다.

○ 김건회 : 제청하다.

○ 위원장 :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임시총회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다.

□ 폐회선언

○ 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1시55분)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24년 8월 16일

위원장	최문기 (인)		이 사	김건회 (인)	
이 사	김장성 (인)		이 사	김정석 (인)	
이 사	김봉수 (인)		이 사	남주곤 (인)	
이 사	허재관 (인)		이 사	민세홍 (인)	
이 사	이광호 (인)		이 사	우창우 (인)	
감 사	이정희 (인)				

붙임-1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목적) 본 회는 우리나라 연구행정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연구행정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 공공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의 연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 ---------- ----------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략) 3. <신 설> 3. 국제교류 4. 연구행정 자격 인증과 우수한 업적의 표창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 ② (생략) ③ 제2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법인 운영비 또는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기금으로만 적립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본회는 ---------- ----------. 1.~2. (현행과 같음) 3. 연구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조사분석 수행 및 홍보 4.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 6. -----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 ② <삭 제> ③ 제1항의 ---------- ------ 사용하거나, 본회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기금으로만 적립하여야 하며 ------.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회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되, 교육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상으로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 ---------- 하되 ---------- ----------. ② 본회가 ---------- ----------

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
제2장 회원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① 본 회는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연구행정 종사자, 종사 희망자 및 연구행정에 관심을 가진 자 2. 기관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관련된 분야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_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자격) ① 본회는 ------- -------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동의하는 ---------------------- --------------- 2. ---- 본회의 활동과 관련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본회의 ------ 개인 또는 기관은 소정의 ---- 신청서를 본회에 -------. ③ ---------------------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선적인 수혜 대상이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본 회의 사업에 참여 2. 의결권 3.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 2. 회칙 준수 ③ 제1항에 의한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삭 제> 1. --- 2. ---------------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2항에 의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 -------.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미납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회의 규정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을 위반하여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자격 상실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2. (생략) 3. 이사 20인 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하며, 최소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4. 감사 1인 이내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 1. ~ 2. (현행과 같음) 3.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중임 2회 가능)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2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 ③ ――――――――――――――――――――――― 임원의 ――――――.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 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결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정 인원수 이내이면 충원하지 않아도 되며, 적정 인원 부족시 결원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생략)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결원이 발생하여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이사 인원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 본회를 ――――,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며, ――. ② ―――― 회장의 ――――――― 대리하고 ――――――――――――――――. ③ ――――――――――――――――――――――― 의결하며 ――――――――――――――――――――.
제14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의 발전에	제14조(고문)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고문의 인원수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생략) ② 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1. ------------ 자 2. ------------- 자 3. ------------------------------- 자 4. ------------------------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 자 6.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때에는 - 임원의 ------.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생략)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해임) ------------------------------------ 의결로 ------. 1. 본회의 ---------- 2. (현행과 같음) 3. 본회의 --------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본 회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업무수행상 실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본 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 본회의 최

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고 의결기관이며 ----------.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를 회의 개시 15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포함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구분하며 -- 소집 --- . ②----------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 ③---------- ---------- -- 7일전까지 ---------- ---------- ----------. ④ <삭 제>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생략)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 ---------- ----. 1. -- 선출과 해임 -- -- -- -- 2.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 ------ 3. ------- 처분과 취득, 자금의 -------- 4. 예산과 결산---- 5. (현행과 같음) 6. -- 본회의 ---------- ------
제21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케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
제5장 이사회 第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신 설>	**제5장 이사회** 第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 ③ −− 아니하다.
第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문에 불구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삭 제>
第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第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2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삭 제>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 제>
<신 설>	제26조(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27조(위원회)① 회장은 본 회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업무집행과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 2. (생략)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 5. (생략)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원의 조달) ① 본회의 사업과 ------ 다음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 2. -------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 5. (현행과 같음) ② 본회가 ----------.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 전까지 ---------- 거쳐 ----------. ② 본회는 --- 결산의 내용을 ----------.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 년 1회 ----------.
제34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년도 후원금 모금액 및 사업실적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삭 제>

제7장 사무부서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35조(사무국) ① 본회의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 본회가 ---------------------- 3분의 2----------------------------.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 본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정) ---------- 본회의 ------------------------ 규정으로 ---.
부 칙	부 칙
제1조 ~ 제2조(생략)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1조 ~ 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 <삭제>
	부 칙<2024.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2	정관 개정 전문

한국연구행정협회 정관

제정 2024.06.21
일부개정 2024.8.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Managers and Administrators (KARM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연구행정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연구행정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연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단만,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행정 관련 교육, 학술대회, 워크숍, 심포지움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저널,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교환, 조사분석 수행 및 홍보**
4. **국내 · 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연구행정 자격 인증과 우수한 업적의 표창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② <삭제>

③ **제1항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본회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기금으로만 적립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되 교육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상으로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가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① 본회는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연구행정 종사자, 종사 희망자 및 연구행정에 관심을 가진 자
2. 기관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관련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병원, 기업 등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2항에 의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미납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정 이사 인원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고**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사회에 동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이사회에서 제3호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을 해야 한다.

제14조 (고문)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이사회 의결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임원이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를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포함하여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과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1조(성원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제2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6조(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과 참여 이사 기명 날인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회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업무집행과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의 조달) ① 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의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 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 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2024.06.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08.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3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안)

회원자격 및 회비운영 규정(안)

제정 2024.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2장(회원)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① 본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2장 제6조 및 본 규정에 의거 <별표1, 별표2>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기관과 개인을 말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여, 회비의 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과 종신회비를 납부하는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정관 제2장 제7조,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권리를 가진다.

1. 학회 정기간행물, 학술지 및 출판물 제공
2. 연례 컨퍼런스 참가비 할인
3. 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석

③ 기관회원이 지정한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본협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회비 액수 규모,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제4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개인회비, 기관회비로 구분하고, 행사 또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1. 개인회비 : 개인이 매년 납무하는 회비를 말한다. 다만, 등기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은 일시불로 종신회비를 납부한다. 등기임원을 제외한 개인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
2. 기관회비 : 대학, 연구기관, 기업, 협회 등 기관이 매년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5조(회비부과) ① 회비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개인회원이 등기임원이 되어 종신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기 납부한 회비와 종신회비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음 사항에 준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 및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경우
2. 본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간 또는 범위를 정하여 감면하는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비의 수납) ① 회비는 현금(무통장입금, 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 등 사무국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납한다.
② 연회비는 입회일자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여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표4>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관리) ① 회비의 수납 및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총괄 관리한다.
② 회비는 본협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은 회비납부자 장부를 <별표5>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며, 회장의 결재에 의해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결규정에 따른다.
④ 수납한 회비에 대하여 결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한) 회비의 기한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회비미납자에 대한 조치)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당해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미납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제10조(회원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6> 및 <별표7>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납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퇴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다.

제11조(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붙임-4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안)

2024.08.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 제2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4조에 따른 업무집행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 재산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추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규정 하위 요령, 지침 등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협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시상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구성 및 운영) ① 회장이 추천한 등기임원과 기관회원 지정 대표자 중 이사회 심의를 거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기관회원은 연회비 규모, 가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등기임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관회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③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와 제반회무 및 의사록을 정리 보관한다.

제6조(소집 및 심의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심의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비밀회의로 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장, 부회장,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운영위원회) ① 사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운영위원회 소집 및 심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및 보고)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의사 경과 및 결과 등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운영위원회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문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